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3 차 교 육 위 원 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근거 마련 및 징계사유 확인 근거 마련〉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28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2.
3. 회부연월일 : 2025. 7.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시 지방공무원 및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여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대상을 선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사기관의 협조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 또는 조사 진행 여부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받았으나 최근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 사유 회신 불가를 통보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8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시 신청시 임용권자로 하여금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u>교원</u> 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 <u>교원</u> 및 <u>사무직원</u> 으로서-----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u>의원면직</u> 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u>의원면직</u> 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61조의2(<u>의원면직</u> · <u>명예퇴직</u> 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 ----- ----- <u>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u>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u>의원면직</u> 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	④ ----- <u>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u>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4.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
-----.

1. ~ 4. (현행과 같음)

⑤ -----의원면직·명예퇴직-----
-----.

제70조의8(의원면직·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무직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사무직원이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명예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

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명예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1. 퇴직 신청자에 대한 징계 사유 확인 근거 신설

1) 사립학교 교원(안 제61조의2)

□ 「사립학교법」 제61조의2는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회피 목적 등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 사유 및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등의 사유¹⁾가 있는 때에는 퇴직을 제한을 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그런데, 이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비교해 보면 「국가공무원법」에서 ‘퇴직 신청’을 한 경우 임용권자가 징계 사유 등을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교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서 ‘의원면직’에 대해서만 이러한

1) 「사립학교법」 제61조의(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간의 일관성 확보와 불명확성의 해소 취지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참고로, ‘의원면직’과 비교하여 ‘명예퇴직’은 근거규정을 따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속기간 등의 심사행위가 수반되는 것으로, 개정안은 법률의 명확성을 위하여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입법체계 면에서 보면 유사입법례에서는 이를 모두 포함하는 ‘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 측면에서 현행법의 용어를 수정하여 보완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퇴직관련 유사입법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정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략)…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략)…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 사립학교 사무직원(안 제70조의8)

□ 다음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현재 사립학교 교원과 달리 의원면직 신청시에 임용권자가 징계사유의 확인 및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명예퇴직 수당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명예퇴직 신청자의 징계사유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아울러 의원면직에 대해서도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시 교원과 동일하게 절차를 마련하여 부당하게 명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 활동의 지원이라는 공적인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징계회피 등을 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등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퇴직을 신청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게 되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라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는 등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사립학교법」은 사무직원에 대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하여도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퇴직급여가 감액되지 않고 부당하게 지급되게 되므로 사립대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규정을 두어 사립학교 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 및 사무직원의 복무 관리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²⁾를 준용하여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직 중의 사유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징계사유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퇴직 근거 및 재원확보체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퇴직급여	근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급여)			
	재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명예퇴직수당	근거	각 사립학교 정관			
	재원	재정결함보조금(「사립학교법」 제43조)			자체재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부, 재구성

- 2)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근거 신설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라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립학교법」 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사무직원의 정원·운영·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³⁾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구분	교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각 사립학교 정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구성

-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무직원이 정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3) 참고자료1

개정안에 의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재량행위이므로 각 사립학교 법인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고, 해당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참고로, 현행법에서 “사무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면, 교원과 달리 그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4)판시하였고, 입법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보았음.

□ 관계기관 의견을 보면, 교육부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지급제외 사유 등을 수사기관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장 보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한편, 의원면직·명예퇴직 문구 수정과 관련하여,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용어의 통일성 및 명확성을 위해 ‘의원면직·명예퇴직’을 ‘퇴직’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함.

4) 전원재판부 2003헌마533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과 정년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으나, 사무직원의 경우 신분과 정년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학교의 정관 내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탄력적인 인력 수급을 위하여 법률이 관여할 필요성이 교원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입법자가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신분상 차이가 존재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다만, 고려대학교 등 일부 사립대학은 대학 교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재원으로 지급하고 있어 명예퇴직 시 수사기관 조회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

참고 1

학교법인 명예퇴직수당 관련 정관 규정

동국대학교 취업규칙	제85조(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①정관 제87조의2에 의거, 대학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0조의2 및 제87조의2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본 대학교 재직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의 교원 및 직원으로 임용되어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99.7.1.개정)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2000.7.1.신설) 1.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3.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건양대학교 취업규칙	제50조(명예퇴직)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건양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급여)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보수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제50조의2(명예퇴직) ①본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중.고등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에 그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의 대상, 범위 및 수당 지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중.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